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807호 2022. 11. 24.(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566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1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07호

사천시 공고 제2022-1566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 월 24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및 공시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은 조례로 재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공시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사항 삭제
(안 제12조,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법규:「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84, FAX: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807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및 공시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은 조례로 재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공시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1. 24 . ~ 2022. 12. 14.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2조 중 “다음과 같다”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어린이집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영유아----------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삭 제>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삭 제>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	<삭 제>

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삭 제〉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삭 제〉
제4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삭 제〉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삭 제>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6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삭 제>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삭 제>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	<삭 제>

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지역<각 호 신설 2018.5.4.>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삭 제>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 사업 ·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 ·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 · 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 ·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 ·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 ·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 · 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 · 가공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 · 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 · 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